

# BLUEBOOK

- 법학과 -

## [ 법학과 안내 ]

학과장 인사말  
법학과 소개 및 연혁  
교육목표 및 특성  
교수진  
전공교과 소개  
진로안내  
학생자치활동  
고시반

계명대학교 법학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 1. 학과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법학과 학과장 김택수입니다. 계명대학교 법학과는 1980년 3월 출범한 이래, 1983년 일반대학원 법학과, 1995년 이부대 법학과, 2000년 경찰법학전공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양질의 법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학 교육의 기본 체계가 크게 변화되었지만, 계명대학교 법학과는 학부 중심의 법학 교육 기관으로서 대구, 경북지역에서 그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법학과와 졸업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전문직, 학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법학과에서는 전공에 대한 충실한 전문교육 외에 학생 여러분의 도전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에서 제공하는 이론과 판례, 세미나 수업은 학생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능력을 길러줄 것이며, 전공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변화된 사회에 맞추어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계명대학교 법학과를 통해 중요하고 즐거운, 그리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법학과 소개 및 연혁

법학과와 터전이 마련된 것은 1980년 사회과학대학 내에 법정계열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부터이며, 비사고시원을 설치하면서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대학원 석사과정이 설치되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학 교육을 위하여 1985년 법학과는 법과대학으로 분리·승격되었습니다. 나아가 1988년 박사과정을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법학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일학과로 운영되어 오던 법과대학은 1990년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분

리되었으나, 교육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6년 법학과로 통합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법학과 야간과정을 신설하여 질적, 양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도입된 학부제에 따라 법과대학 내에 법학부가 설치되었으며, 2000년 법과대학이 폐지되고 법학부로 개편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실시된 학과제에 따라 법학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연 혁 》

|          |  |
|----------|--|
| 2022. 03 | 이부대학 모집중지 및 법학과 정원 80명으로 변경            |
| 2015. 03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로 편제개편                       |
| 2011. 03 | 법학부를 법학과, 경찰법학과로 개편                    |
| 2006. 03 | 법학부 경찰법학전공 신설                          |
| 2004. 03 | 법학부의 (주간)신입생 모집정원을 각각 90명으로 증원         |
| 2004. 02 | 법경대학으로 통합 첫해 학위수여식(법학전공 졸업생 누계 1,273명) |
| 2003. 03 | 법학부와 경찰학부를 통합하여 법경대학으로 개편              |
| 2003. 02 | 법학부와 경찰학부가 사회관에서 쉐덕관으로 이전              |
| 2000. 03 | 학부제 전면 실시로 법과대학을 법학부로 개편               |
| 1999     | 1999 학년도 법학분야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인정받음         |
| 1997. 03 | 학부제 도입으로 법과대학을 법학부로 명칭 변경              |
| 1996. 03 |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를 법학과로 통합                    |
| 1995. 03 | 법학과 야간강좌 설치(정원 40명)                    |
| 1994. 10 | 법학연구소 설치 인가                            |
| 1990. 03 | 법학과를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개편(정원 각각 40명)         |
| 1988. 09 | 법과대학을 대명캠퍼스에서 성서캠퍼스 사회관으로 이전           |
| 1988. 03 | 법학과 정원 60명으로 증원 인가                     |
| 1987. 11 | 법학전공 박사과정 인가                           |
| 1984. 10 | 법과대학으로 승격 인가                           |
| 1984. 02 | 법학과 제1회 졸업생 배출                         |
| 1983. 03 | 법학전공 석사과정 인가                           |
| 1980. 03 | 사회과학대학에 법학과 설치(정원40명)                  |

### 3. 교육목표 및 특성

#### (1) 교육목표

- ▷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법학인 육성
- ▷ 도덕성을 갖춘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의 법학인 육성
- ▷ 인간애를 갖춘 봉사하는 지도자로서의 법학인 육성

#### (2) 특성

- ▷ 다양한 진출분야, 법조인 양성을 위한 프리로스쿨
- ▷ 특색화된 운영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과
- ▷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공무원 시험준비에 유리한 학과
- ▷ 안정적인 전문직업 확보에 적합한 학과
- ▷ 실생활에 필수적인 법률을 가르치는 학과

#### (3) 특장점

##### 1) 다양한 진출분야, 법조인 양성을 위한 프리로스쿨

법학과는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을 위한 프리로스쿨(Pre-Law School)로 법률전문직 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 중심의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학과 전공자들은 4년간 법학을 사전에 교육받음으로써 로스쿨 진학에 필수적인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에 대비하게 됩니다. 또한, 학부 중심의 법학교육을 사전에 받음으로써 비법학과 전공자에 비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시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학과는 로스쿨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과과정과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학과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5급 전문직, 7·9급 일반 행정공무원, 검찰 사무직, 법원 행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실무 전문가인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과는 전문법조인이나 공무원, 자격증 시험 외에도 공단·공사 등 공기업체와 일반기업체, 자영업 등 그 진출분야가 다른 학과보다 다양합니다. 법학과에서 훈련된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는 모든 조직체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자의 중요한 자질이기에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법학과의 필요성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학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조인, 경찰 총경·간부, 검찰, 법원행정직 공무원 등을 배출하였으며, 현직 동문들이 재학생들에게 진도별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 특성화된 운영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과

법학과는 로스쿨 진학 준비생들을 위하여 비사고시원 내에 국가고시반을 설치하고, 전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시험준비에 필요한 숙식·독서실·참고자료·시험정보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준비를 위해서는 특별반(수험재)을 설치하여 지정좌석·참고자료·시험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강 및 모의고사 실시, 진로별 전담지도교수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학과에는 청우법학회·실천법학회·참길법학회 소속 학생들이 학회 활동을 통해 법적 사고를 키우고 있고, STUDY GROUP을 만들어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찰청, 법원 및 교도소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문제를 다루는 각종 세미나 과목과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감 있게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검찰청·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법학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계명법조회 역시 재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학과 교수 및 동창회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국가시험 또는 자격증 시험준비 등에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3) 다양하고 안정적인 직업확보에 적합한 학과

안정적 직업인 공무원에게 법률지식은 필수적이며,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시험과목에서 법학과목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학과는 공무원 또는 자격증 시험준비에 필수적인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제 일상에서 빈번히 마주하게 되는 법률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중요과목도 그 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중 특강을 통해 안정적 직업확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4. 교수진

|                                      |   |
|--------------------------------------|---|
| 이로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법</li> <li>• 고려대학교 법학박사</li> </ul>   |
| 김택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소송법/경찰학</li> <li>• 프랑스 Nancy2 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 전공)</li> <li>• 법학과 학과장</li> <li>• 이부대 법학과 학과장</li> <li>• 대학원 법학과 학과장</li> </ul> |
| 김종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li> <li>• 한양대학교 법학박사</li> </ul>  |
| 김재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li> <li>• 고려대학교 법학박사</li> </ul>  |
| 박성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소송법</li> <li>•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li> </ul>   |
| 김영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법</li> <li>• 독일 Leipzig 대학교 법학박사</li> </ul>  |
| 이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li> <li>• 부산대학교 법학박사</li> </ul>  |
| Atteraya,<br>Madhu Sudhan<br>(겸직 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cial Welfare</li> <li>• 연세대학교 박사</li> </ul>  |

#### 5. 전공교과목 소개

##### (1) 전공교과목

| 구분       | 학년   | 1학기  | 2학기  |
|----------|--|--|--|
| 전공<br>과목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학개론</li> <li>• LEGAL ENGLISH 1(영어강의)</li> <li>• 대학생활과진로설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총칙</li> <li>• 형법총론(1)</li> <li>• LEGAL COMMUNICATION AND WRITING SKILLS(영어강의)</li> </ul>  |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권법</li> <li>• 헌법(1)</li> <li>• 형법총론(2)</li> <li>• 법협상론(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보물권법</li> <li>• 상법총론</li> <li>• 헌법(2)</li> <li>• 형법각론(1)</li> <li>• 소비자분쟁해결론</li> <li>• 행정법기초</li> </ul>   |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소송법(1)</li> <li>• 회사법</li> <li>• 국제거래법</li> <li>• 채권법총론</li> <li>• 형법각론(2)</li> <li>• 형사절차와인권</li> <li>• 행정절차와행정구제</li> <li>• 경찰헌법</li> <li>• 노동법(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음수표법</li> <li>• 채권법각론</li> <li>• 형사소송법(2)</li> <li>• 민사소송법(1)</li> <li>•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Law(영어강의)</li> <li>• 법학전공글쓰기</li> <li>• 개별행정법이해</li> <li>• 노동법(2)</li> <li>• 통치기구론</li> </ul> |
|          |  | • 법학프로젝트   |  |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법</li> <li>• 보험해상법</li> <li>• 가족법</li> <li>• 민사소송법(2)</li> <li>• 환경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통상법</li> <li>• 민사집행법</li> <li>• 헌법소송법</li> <li>• 전자상거래법</li> <li>• 민사법세미나</li> <li>• 국제인권법</li> </ul>   |
| 전학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학창업현장실습(1), (2)</li> <li>• 법학학기창업현장실습</li> <li>• 법학현장실습(1), (2), (3), (4)</li> <li>• 법학학기현장실습</li> </ul> |  |  |

## (2) 법학과 졸업기준

□ 대학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 필수과목과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2) 선택과목으로 구분됩니다. 영역별로는 (1)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 (2) 교양(공동교양, 균형교양, 일반교양), (3) 교직 과목으로 구분됩니다.

□ 학점 이수 체계: 120학점 이상(2024년부터) 이수 입학년도

| 전공필수과목  | 외국어과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학개론</li> <li>· 대학생활과진로설계</li> </ul> <p>(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023학년도 법학과 신입생까지는 전공필수과목 없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학과에 개설된 전공영어강좌 1과목 이상 이수하거나, 토익 600점 이상 취득</li> <li>★ 적용대상: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해당됨 [1전공(본인전공)만 해당, 복수전공 하는 학과(전공)는 해당 없음]</li> <li>★ 적용제외: 편입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이수학생, 외국인학생</li> </ul> |

## 6. 진로안내

### (1) 졸업 후 진로(개관)

| 시험종류        | 진출분야  | 사무실     | 비고      |
|-------------|---|---------|---------|
| 로스쿨/변호사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li> </ul>  | 변호사 사무실 | 공무원/자격증 |
| 검찰·법원 공무원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직 및 법원직 공무원</li> </ul>   | 법무사 사무실 | 공무원     |
| 경찰공무원 시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간부 및 순경</li> <li>▪ 국가정보원, 청와대경비단 등</li> <li>▪ 일반행정공무원</li> </ul> | 행정사 사무실 | 공무원     |
| 준공무원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단 등 공기업체</li> <li>▪ 근로복지공단·법률구조공단 등</li> </ul>                 |         | 준공무원    |

|              |   |       |     |
|--------------|---|-------|-----|
|              | (법학과 출신자만의 특채 등)  |       |     |
| 기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등 일반 사기업체 (법학과 출신자만의 특채 등)</li> </ul>   |       |     |
| 법학 관련 자격증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사</li> <li>▪ 변리사</li> <li>▪ 공인중개사</li> <li>▪ 주택관리사</li> <li>▪ 공인노무사</li> </ul> | 개인사무실 | 자격증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계(법학교수 등)</li> </ul>  | 연구직   | 연구직 |

### (2) 법학과 진로별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각종 자격증 분야]

#### ■ 로스쿨/변호사시험 (판사, 검사, 변호사)

| 시험과목 | 필수                                | 선택  |
|------|-----------------------------------|---|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1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            | 법학개론<br>형법총론(1)<br>민법총칙 | 헌법(1)<br>헌법(2)<br>형법총론(2)<br>형법각론(1)<br>물권법<br>담보물권법<br>상법총론<br>행정법기초 | 형법각론(2)<br>형사소송법<br>채권법총론<br>채권법각론<br>회사법<br>민사소송법(1)<br>어음수표법<br>행정절차와행정구제<br>개별행정법이해 | 헌법소송법<br>가속법<br>민사소송법(2)<br>민사법세미나<br>민사집행법<br>보험해상법 |

■ 법무사

|          | 1차   | 2차   |
|----------|--|--|
| 시험<br>과목 |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br>형법총론(1)<br>민법총칙 | 헌법(1)<br>헌법(2)<br>형법총론(2)<br>▶ 형법각론(1)<br>▶ 물권법<br>▶ 담보물권법<br>▶ 상법총론 | 형법각론(2)<br>형사소송법<br>채권법총론<br>▶ 채권법각론<br>▶ 회사법<br>▶ 민사소송법(1)<br>▶ 어음수표법 | 헌법소송법<br>가족법<br>▶ 민사소송법(2)<br>▶ 민사법세미나<br>▶ 민사집행법<br>▶ 보험해상법 |

■ 공인노무사

|          | 1차  | 2차   |
|----------|---|--|
| 시험<br>과목 | 필) 노동법Ⅰ, 노동법Ⅱ, 민법, 사회보<br>험법, 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br>택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 필) 노동법(기본이념 및 총론부분), 인사<br>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br>택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br>송법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br>민법총칙 | ▶   | 노동법(1)<br>▶ 채권법총론<br>▶ 채권법각론 | ▶ 노동법(2) |

■ 공인중개사

|          | 1차  | 2차   |
|----------|---|--|
| 시험<br>과목 | 부동산학개론, 민법(총칙, 질권 제외 물<br>권법, 채권법 중 계약법 일부) 및 민사<br>특별법(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 | 부동산공법,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법<br>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부동산<br>등기법 및 지적법)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br>민법총칙 | ▶ 물권법<br>▶ 담보물권법 | ▶ 채권법총론<br>▶ 채권법각론 | ▶ 민사법세미나 |

■ 감정평가사

|          | 1차   | 2차                             |
|----------|--|--------------------------------|
| 시험<br>과목 | 민법(총칙과 물권법), 경제학원론, 부동<br>산학원론, 부동산감정평가 관계 법규,<br>회계학, 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br>및 보상법규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br>민법총칙 | ▶ 물권법<br>▶ 담보물권법 | ▶   | ▶ 민사법세미나 |

■ 변리사

|          | 1차  | 2차  |
|----------|---|---|
| 시험<br>과목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상<br>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민법<br>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br>개론, 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 | 필)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br>민사소송법(강제집행 제외)<br>택1) 저작권법(조약포함), 디자인 보호<br>법(조약포함)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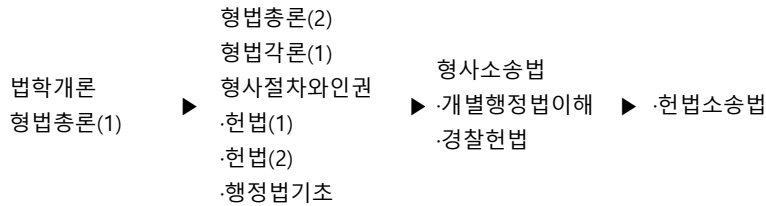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br>민법총칙 | ▶ 물권법<br>▶ 담보물권법 | ▶ 민사소송법(1) | ▶ 민사법세미나<br>▶ 민사소송법(2) |

### (3) 법학과 진로별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각종 공무원 분야]

#### ■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9급

|                  |                        |
|------------------|------------------------|
| <b>시험<br/>과목</b>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7급에 헌법, 행정법이 추가(앞에 점표시)되면서, 국어는 PSAT(공직적격성평가)으로 대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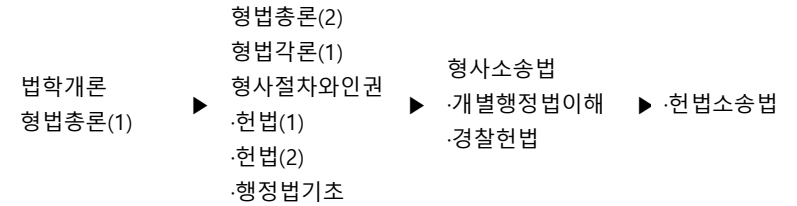
#### ■ 철도공안직(철도경찰) 9급

|           |                            |
|-----------|----------------------------|
| <b>시험</b>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
|-----------|----------------------------|

|           |  |
|-----------|--|
| <b>과목</b> |  |
|-----------|--|

※ 7급에는 헌법, 행정법이 추가(앞에 점표시)되고, 형법총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변경되며, 국어는 PSAT(공직적격성평가)으로 대체됨.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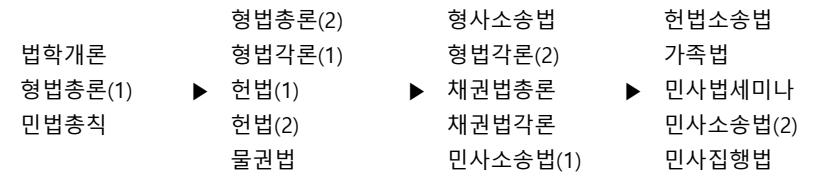


#### ■ 법원직 9급

##### (1) 법원사무직렬

|                  |                                       |
|------------------|---------------------------------------|
| <b>시험<br/>과목</b> | 영어, 국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담보물권법  
형사절차와인권

(2) 등기사무직렬

|                  |  |
|------------------|--|
| <b>시험<br/>과목</b> | 영어, 국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법), 부동산등기법 |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br>민법총칙 | ▶ 헌법(1)<br>헌법(2)<br>물권법<br>담보물권법<br>상법총론 | ▶ 민사소송법(1)<br>민사소송법(2)<br>채권법총론<br>채권법각론<br>회사법 | ▶ 헌법소송법<br>가족법<br>민사법세미나<br>민사집행법 |

■ 출입국 관리직 9급

|                  |                           |
|------------------|---------------------------|
| <b>시험<br/>과목</b>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       | ▶ 행정법기초 | ▶ 국제거래법 | ▶ 국제법<br>국제통상법 |

■ 보호직 9급

|                  |                               |
|------------------|-------------------------------|
| <b>시험<br/>과목</b>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       | ▶ 형사절차와인권 | ▶ 형사소송법 | ▶   |

■ 교정직 9급

|                  |                             |
|------------------|-----------------------------|
| <b>시험<br/>과목</b>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       | ▶ 형사절차와인권 | ▶ 형사소송법 | ▶   |

■ 경찰간부직

| 시험<br>과목 | 필수                | 선택                    |
|----------|-------------------|-----------------------|
|          |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1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br>형법총론(1)<br>민법총칙 | ▶ 헌법(1)<br>헌법(2)<br>형법총론(2)<br>형법각론(1)<br>형사절차와인권 | ▶ 형사소송법<br>형법각론(2)<br>경찰헌법 | ▶   |

기존 시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영어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영어  | 한국사                |
|----------|---|--------------------|
| 시험종류와 점수 | TOEIC : 625점<br>G-TELP : Level 2 50점<br>TOEFL : PBT 490점, IBT 58점<br>TEPS : 280점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br>2급 이상 |
| 유효기간     | 3년  | 4년                 |

■ 순경직

|          |   |
|----------|---|
| 시험<br>과목 | 헌법(총론 및 기본권론), 형사법(형법 + 형사소송법), 경찰학(전 범위) |
|----------|---|

| 교육과정표상 과목명      |   |                            |     |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법학개론<br>형법총론(1) | 헌법(1)<br>헌법(2)<br>▶ 형법총론(2)<br>형법각론(1)<br>형사절차와인권 | 형사소송법<br>▶ 형법각론(2)<br>경찰헌법 | ▶   |

※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과 및 일정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이 인정됨  
 ※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중 '경찰학', '범죄학'은 경찰행정학과에서의 수강으로 보충하면 됨

기존 시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영어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영어           | 한국사          |
|----------|--------------|--------------|
| 시험종류와 점수 | TOEIC : 550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      |   |    |
|------|---|----|
|      | G-TELP : Level 2 43점<br>TOEFL : PBT 470점, IBT 52점<br>FLEX : 457점<br>TOSEL : Advanced 510점 | 이상 |
| 유효기간 | 3년  | 4년 |

## 7. 학생자치활동

### (1) 학생회

#### □ 학생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믿음으로 함께하고 행동으로 보답하는' 계명대학교 제42대 법학과 학회장 강혜선입니다. 법학과 학생회는 198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천칭"은 기획부, 홍보부, 총무부, 복지부, 학술부, 행정부, 체육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의 날 행사, 야외학술 세미나, 시험 격려행사,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등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학우들의 법학과 생활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2대 법학과 학생회는 행사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학교생활 도중 생기는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들을 빠르게 수렴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늘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법학과 학생회 "천칭"은 보다 더 나아가고 개선되는 법학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학생회란

학생회는 법학과 재학생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적 대표기구로서, 법학과와 발전과 학생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 법학과 학생회의 연혁

법학과 학생회는 법학과가 처음 자리했던 사회관에서 1980년대 초 최초로 조직되었으며, 2003년에는 쉼터관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터를 잡았습니다. 이후 법경대학 소속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학과 학생회의 구성

학생회는 재학생 모두로 구성됩니다. 흔히 우리들이 '학생회'라고 부르는 조직은 엄밀히 말해서 학생회장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학생회 집행부'입니다. 학생회 집행부는 크게 중앙정부와 같은 총학생회 집행부와 지방정부와 같은 단과 대학 학생회 집행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학과 학생회는 학생회장 아래 기획부, 총무부, 홍보부, 복지부, 체육부, 행정부, 학술부로 구성됩니다. 2학기 후반기에 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며, 새롭게 시작이라는 집행부의 구성원은 모든 재학생들에게 공고를 통해 지원을 받아 법학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열정을 가진 학우들로 구성되며 각 부에 부장, 차장을 두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 법학과 학생회 행사

| 행사의 종류        | 내용   |
|---------------|--|
| 신입생 환영회       | 신학기를 맞이하여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의 숙지와 입학한 신입생과 다시 복학한 복학생들을 맞이하여 상견례와 학생들의 학회 활동 등의 소개를 통한 신입생의 전반적인 입학 환영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입생 환영회는 2월 말경에 실시됩니다. |
| 야외학술세미나 및 M.T | 새롭게 시작된 대학생활을 통해 학우들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한 단합대회 및 학부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이 행사는 3월 초에서 3월 말 사이에 실시됩니다.   |
| 스승의 날 행사      | 푸르른 오월의 신록을 맞이하여 학우들의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옆에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5월 15일 전후로 실시됩니다.   |
| 체육대회          | 법학과와 단합과 젊음의 열정을 위해 교수님을 모시고, 다른 단과들과의 축구, 농구, 발야구 등의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된 어울림의 장입니다. 이 행사는 5월경에 실시됩니다.  |
| 축제            | 대학교축제란 젊음의 함성과 정열, 낭만과 진취의 기상, 창의적 기상을 발휘하는 대학의 문화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학교 전체의 행사로, 이 축제의 마당과 법학과 학생회는 친목도모를 위한 술자리로 '일일 호프'라는 용어의 '주막' 행사를 주최            |

|               |  |
|---------------|--|
|               | 합니다. 대학의 공연과 예술들을 감상하며, 학생여러분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장입니다. 이 행사의 판매 수입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행사는 전반기 5월경에 실시됩니다.   |
| 모의재판          | 실제의 재판을 본떠서 논고·변론·심리·선고 등이 재학생들의 배역으로 진행되는 법학과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법학수업을 현실사회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법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학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하반기 가을경에 실시되는 행사로 법학과 교수님의 지도와 학생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로 학생회 주최, 각 학회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
|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2회 실시로 각 학기당 1회 실시되며, 집행부소개와 직전학기 결산내역보고, 건의사항으로 진행됩니다. 단건에 대해서는 재학생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 법학과 학생회 간부수련회 | 이 행사는 8월 중순에 실시하여 하반기 사업계획 기획과 전반기 결산 및 집행부들의 단합을 갖는 행사입니다.  |

(2) 학회

| 행사의 종류 | 내용   |
|--------|--|
| 청우법학회  | 청우법학회는 법학도로서 학습활동을 통한 법적 지식습득과 기타 올바른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198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과 내 관련된 스터디를 진행하고, 학술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하여 리얼마인드와 지식을 형성하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진행하여 학회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 학술세미나 활동을 통해 학회원들이 서로 협동심을 키우고, 선후배 간의 화합을 기릅니다. 청우법학회만의 행사인 토론회와 청우인의 밤이라는 행사가 진행되며, 학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질과 법학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배웁니다. |
| 실천법학회  | 실천법학회는 1990년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적 문제들을 토론, 연구함으로써 법학적 사고형성과 정의실현에 기여하고,  |

|              |   |
|--------------|---|
|              | <p>아울러 봉사활동을 통해 인간미 넘치고 실천하는 법학인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실천법학회는 법학연구와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며 야외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신입생은 법학도로서의 기본소양을 익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실천법학회에 대한 이해와 선배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재학생은 선후배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세미나를 직접 기획 및 지도함으로써 학회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키우며 법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
| <p>참길법학회</p> | <p>참길법학회는 노동법과 관련하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에 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참길인의 학습능력증진을 도모하고, 학회원들 간의 협동심 및 유대감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참길법학회는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법적 고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회 상견례를 통해 친목 도모와 협동심 형성, 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야외학술세미나 활동을 통하여 단체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릅니다. 그 외에도 정기총회 등을 통해 선후배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배웁니다.</p> |

## 8. 고시반

### (1) 비사고시원

□ 비사고시원 내 국가고시반은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국가고시(행정/외무/기술) 및 이에 준하는 시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과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내 면학분위기 조성과 자기성취의 기회를 제고시키고자 설치된 기관으로서 그 동안 다수의 사법시험 합격자와 행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 비사고시원 개관

- 명교생활관(기숙사) 내 비사고시원(국가고시반과 공인회계사반으로 운영)
- 정 원 : 국가고시반 20명, 공인회계사반 20명
- 명교생활관 내 진리동 건물

[운 영] 1-3층은 기숙사생, 4층은 비사고시원생  
 [숙 실] 4인 1실  
 [각층별]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세탁실.

- 국가고시반에서는 자체 학습프로그램에 의하여 개인의 지정석 독서실, 인터넷 동영상강의실, 자료실의 운용으로 냉난방시설의 완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최신의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입실자 전원에게 기숙사 무료 제공(관리비 지원/식비만 본인부담), 과거 입실 경험이 있거나 현재 실원자중에서 1차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에게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경우 국가고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집념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비사고시원 선발 및 입실

- 선발 : 정시모집(3월말 공고, 4월초 입실), 추가모집(9월초 지도교수 추천 및 원장 승인)
- 정시모집 : 1학년은 영어 시험만 실시  
 재학생은 영어 및 헌법/민법/형법(택1) 시험
- 추가모집 : 지도교수 추천에 의해서만 추가모집
- 1차 합격자 :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실 가능
- 영어시험대체 : TOEIC 70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 (2) 수현재

- 수현재는 '법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며, 이를 통하여 장차 사회지도자가 되기 위한 법률공부를 하는 집'이란 뜻이며 쉼터관 232-2호에 설치된 법학과 전용의 국가고시 대비반입니다.
- 수현재 입실의 장점 및 학습여건
  - 스탠드와 책꽂이가 완비된 1인 1지정 좌석 제공
  - 공무원 시험대비 동영상 강의 제공
  - 공무원 시험교재 제공
  - 동영상 강의 시청을 위한 컴퓨터 학습실 운영

### 수헌재 학습여건

- 수헌재는 연중무휴 일일 16시간 개방
- 쾌적하고 안락한 냉난방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중앙도서관 및 기타 단과대학에 갖추어진 어떤 학습실 보다 훌륭한 학습여건으로 여러분의 학습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 스탠드와 책꽂이가 완비된 좌석으로 여러분의 집중력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매 학기 마다 추가되는 최신판 공무원 시험강의 교재로 교재 구입부담을 줄이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수헌재 바로 옆에 설치된 동영상 학습실은 수헌재 실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 수헌재에 입실하려면

### 수헌재 선발 및 입실

- 수헌재 입실은 정기 입실고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실고사는 공무원 영어시험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 최종 성적은 학점 30% + 영어시험 70% 로 결정되며, 정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됩니다.
  - 입실을 원하시는 분은
    - 전학년 성적증명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여
    - 수헌재 실장에게 제출하신 뒤,
    - 시험 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하여 응시하시면,
    - 2일 이내로 기재하신 연락처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 2주 전에 법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 [ 학사 안내 ]

수강신청

교육과정

휴학

복학

성적경고 및 제적 기준

학생증

EDWARD 시스템 개인정보 수정

기타 공지사항

*Abundans cautela*

*non nocet*

## 1. 수강신청

### (1) 수강신청 방법

- 학생 스스로가 수업 받을 과목을 결정하여, 수강신청 시스템(<http://sugang.kmu.ac.kr>)에서 로그인 후 해당 과목을 선착순으로 신청. 다만, 1학년(당해년도 신입생)의 경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은 교무·교직팀에서 일괄 수강신청을 하며 이 과목들은 수강정정 할 수 없음.
- 일괄 수강신청 과목 : 공통교양, 전공기초, 1학년 전공필수
- 일괄 수강신청과목 이외의 과목은 본인이 수강신청 기간(1·2차)에 수강신청 하여야 함
- 개강 전 미리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을 확인하여 강의시간과 강의실을 확인할 것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신청확인]에서 확인 가능
- 수강신청 하려는 과목이 수강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따라서 수강신청 시작 시간에 빠르게 입력하여야 원하는 과목을 신청 할 수 있음.
- 출석부 확인(수업 시 반드시 확인)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 바람.
- 연간 34학점(학기당 18학점, 학년당 3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25 이상인 학생은 다음학기에 3학점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음.

### (2) 수강신청 관련 안내

- 강의시간표 조회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강의시간표조회]
- 강의시간표 변경 조회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강의시간표변경조회]

- 영구성적 조회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성적처리 → 영구성적조회]
- 수강신청 내역 확인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신청확인]

## 2. 교육과정

### (1) 학점이수 체계 : 120학점 이상 이수(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 과 목 구 분   | 일 반 대 학  |
|-----------|----------|
| 공통교양      | 12학점     |
| 균형 및 일반교양 | 18학점 이상  |
| 제1전공      | 60학점 이상  |
| 계         | 120학점 이상 |

※ 상기에서 정한 학점 외에 졸업에 필요한 120학점은 전공(제1전공, 타전공), 균형교양, 일반교양 과목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 (2) 전공필수 확인 방법

- 입학년도 전공필수 과목 확인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교육과정관리 → 연도별교육과정조회]
- 전공필수과목은 입학 당시에 학과(전공)에 편성되어 있는 전공필수과목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입학 이후 전공필수 과목이 전공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폐지되면 그 과목은 필수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

## 3. 휴학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휴학)]

### (1) 일반사항

- 미등록 휴학 가능 휴학신청서 제출 기간 : 수업일수 1/4선 까지

- 등록 후 휴학 : 해당 학기 정규 등록일부터 휴학 해당학기 정기시험 (학기말고사) 시작일전까지
- 휴학기간: 일반휴학은 1회에 1년(2학기) 이내이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질병 및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락하지 않음
- 장학금의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 장학은 소멸됨)

## (2) 가사휴학(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신청자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 해당학기 수업일수 1/3 익일부터 1/2선 까지 신청자 : 등록금 반액 대체인정
-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익일 이후 신청자: 등록금 소멸

## (3) 군입대휴학(EDWARD 시스템에서 신청-입영통지서 스캔 첨부)

- 입대 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를 원칙으로 함
  -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 신청자: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익일부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자
  - 여부사관 의무 복무 3년을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
- ※ 성적취득 희망하는 경우 : 등록금 소멸 / 희망하지 않는 경우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성적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EDWARD 시스템에서 군입대휴학을 신청하고 군입대휴학 신청서를 출력하여 수업을 받는 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확인 후 교무·교직원(학부생)에 방문하여 군입대휴학신청서 제출(담당교수 미확인 시 과목성적 F 처리함)

## (4) 휴학연장

- 가사휴학 연장: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 군전역 후 가사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EDWARD 시스템에서 복학

- 신청 후 승인이 나면 EDWARD 시스템에서 가사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군전역 후 복학기간이 지난 학생 중에 가사휴학으로 전환해야 하는 학생은 휴학연장 신청서와 전역증을 첨부하여 교무·교직원(본관 104호)으로 방문하여 신청

## (5) 군휴학 연장(하사관 복무 중인 학생)

- 휴학연장신청서와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교무·교직원(본관 104호)으로 방문하여 신청
- ※ 의무복무로 인한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이며, 군복무 기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음

## (6) 질병, 출산·육아, 국가고시합격연수, 창업 휴학

휴학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교직원(본관 104호)으로 방문하여 신청

- 질병휴학 : 종합병원의 1개월 이상의 의사 소견이 있는 진단서
- 출산휴학 : 출산진단서, 출산예정진단서
- 육아휴학 : 주민등록등본
- 국가고시휴학 : 연수원 연수증
-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등(본인 학과와 관련된 업종-창업교육센터로 신청)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내규 참조 [홈페이지 상단 학교소개 → 학칙및규정 → 규정찾기]

- 창업휴학 문의 : 창업교육센터 580-6772
- 창업휴학 신청자격 :
  - ①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창업을 한 자로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창업관련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한 자
    2.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관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

- 3. 대학 내외에서 실시하는 2개월 이상의 창업 보육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자
- 4. 창업교과과정을 한 과목이상 이수한 자
- 5. 창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
- 신청 : 1차 수강신청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휴학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7) 귀향신고

군 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교직원(본관104호)에 귀향신고를 하여야 함

### (8) 휴학취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및 교무·교직원(본관104호) 방문 신청

### (9) 군입대를 위한 일반 휴학 시 유의사항

- 휴학을 하였더라도 병무청에 군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영연기 상태가 계속됨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을 하면 장기간 입영대기로 전역 후 복학시기 불일치 등 본인의 장래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입영관련 문의

- 현역병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3) 607-6241~6
- 사회복무요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3) 607-6251~5

## 4. 복학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복학)]

### (1) 일반사항

휴학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면 매학기(1월, 7월-1차 / 2월, 8월-2차) 복학 신청 기간(학기별 학사일정에 기간 안내)에 EDWARD 시스템을 통해 복학신청 하여야 함  
 ※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교직이수를 신청하고자할 경우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 전에 반드시 교무·교직원(☎ 053-580-6007)으로 문의바람

### (2) 군입대 휴학자(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전역증,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가 기재된 초본), 전역예정 증명서 중 1부를 스캔하여 첨부

### (3) 가사휴학자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별도 제출서류 없음

### (4) 질병휴학자

복학신청서, 건강진단서(종합병원) 각 1부 → 교무·교직원(본관104호)으로 방문 후 복학신청

## 5. 성적경고 및 제적 기준

### (1) 성적경고

당해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50(의예과, 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는 2.00, 70점) 미만인 경우 성적경고 함. 단, 최종학기의 성적은 성적 경고 대상에서 제외.

### (2) 성적경고 제적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처리 함. 단 의예과는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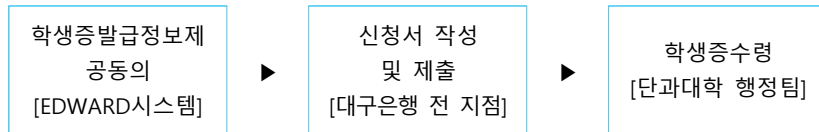
의학과·약학과·제약학과는 4회에 한하여 유급을 허용하며 이를 초과하면 제적처리 됨.

### (3) 기타 제적 처리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 타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
- 성적경고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 징계에 의하여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6. 학생증

### (1) 학생증 신규발급 신청



- ①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 중 최초발급자  
(학번이 생성된 이후 학생증 발급 신청 가능)
- ② 구비서류 : 신분증, 증명사진 3X4cm 1장
- ③ 발급기간 : 1-2주
- ④ 신청절차 :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생지원 → 학생증발급신청 →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 대구은행 방문신청(전지점) → 학생증 수령(본인 단과대학 행정팀)]

### (2) 학생증 분실신청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생지원 → 학생증재발급

신청/등록 → 학생증 분실신청]

### (3) 학생증 재발급 신청

- ① 대구은행 방문 신청(재발급 수수료 발생) :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생지원 → 학생증재발급 신청/등록 → 학생증 분실신청 → 대구은행 방문 신청(전지점) → 학생증 수령(본인 단과대학 행정팀)]
- ② 인터넷 신청(대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만 신청가능, 발급수수료 무료) :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생지원 → 학생증재발급 신청/등록 → 학생증 분실신청 → 대구은행 홈페이지 → 개인인터넷뱅킹로그인 → 종합정보관리 → 카드정보 → Ubi-ID카드 재발급 신청 → 학생증 수령(본인 단과대학 행정팀)]

### (4) 재발급 학생증 등록 확인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생지원 → 학생증재발급 신청/등록 → 재발급 학생증 등록(학생증 사진 상단에 표기된 코드와 화면에 표기된 카드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재발급 된 학생증이 등록되지 않으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음

### (5) 유의사항

- 학생증 발급 정보 제공 동의는 재학기간 중 1회만 동의
- 학생증 발급 신청 및 수령은 재학기간 중에만 가능  
(졸업생 및 제적생은 학생증 발급 불가)

## 7. EDWARD 시스템 개인정보 수정

[공통 → 시스템공통 → 기본설정 → 환경설정 → 개인정보수정]

연락처, 영문명 이름,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을 반드시 입력(확인, 수정)하여 미입력으로 인한 각종 학사 안내사항을 통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 영문 성명 입력 : 외국인 교원 수업 수강자는 반드시 입력  
(예시 : Hong Gil Dong)
- 주소 : 각종 학사 안내 사항 우편 발송
- E-mail : 각종 학사 안내 사항 메일 전송
- 휴대전화 : SMS서비스, 휴·복학 승인 번호전달, 등록 등 각종 학사 안내사항 전달

## 8. 기타 공지사항

- 수강포기, 학점포기, 복수전공, 부전공, 성적경고, 강의평가, 계절학기, 조기졸업, 졸업논문, 교원자격증, 전과, 휴학, 복학, 특별학점취득 등에 관한 내용은 학사 홈페이지 [홈페이지 상단메뉴 → 학생서비스 → 학사안내]를 참고바람
- 위의 안내 외에 계명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mu.ac.kr>)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 바람
- 지도교수 확인 방법 [EDWARD시스템 → 학사 → 학적기본관리 → 신상정보]

|        |                |              |                                      |
|--------|----------------|--------------|--------------------------------------|
| 교무·교직원 |                | 수업           | 580-6066, 6068, 6069<br>FAX 580-6067 |
| 교무     | 580-6007       | 증명           | 580-6311~2<br>FAX 580-6065, 6315     |
| 교직     | 580-6008, 6009 | 법학과 사무실      |                                      |
| 학적     | 580-6062, 6063 | 053-580-5389 |                                      |